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670호(號) 1929년(昭和 4) 3월 30일 토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12호(號)

1927(昭和 2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28호(號)(조선국유철도화물운송규칙[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]) 별표(別表) 화물특정임률표(貨物特定賃率表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29(昭和 4)년 3월 30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야마나시 한조(山梨半造)

국선(局線) 내(內) 특정임률(特定賃率)의 부문[部] 철광석(鐵鑛石)의 항(項) 임률(賃率) 「1.54엔(円)」을 「1.50엔(円)」으로, 기사(記事) 중(中) 「1929(昭和 4)년」을 「1930(昭和 5)년」으로 개정(改正)함.

만철선(萬鐵線) 발착(發著) 특정임률(特定賃率)의 부문[部] 석탄(石炭: 본계호[本溪湖] 세분탄[洗粉炭])의 항(項) 기사(記事) 중(中) 「1929(昭和 4)년」을 「1930(昭和 5)년」으로 개정(改正)함.